

생활임금 서약제 민간기업 참여 안내

【 생활임금 서약제 】

업력 2년 이상의 도내 소재 기업 중 소속 근로자에게 시군에서 결정하는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서약하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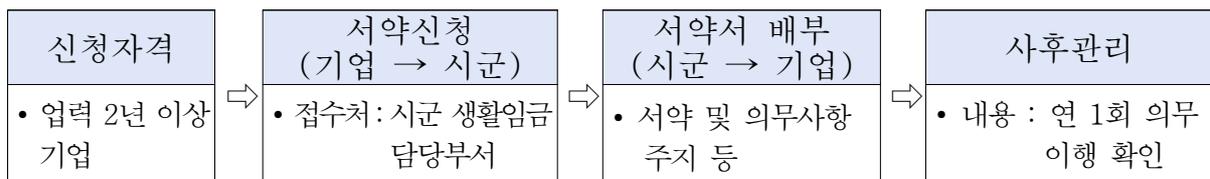
□ 목적

-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,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개요

- 신청자격 : 업력 2년 이상*의 경기도 소재(본사 또는 주공장) 기업 중 시군의 생활임금** 이상 지급하고 있는 기업
 - * 사업자등록증(개업연월일) 기준 경력 2년 이상(도내 소재 기간 관계없음)
 - **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의 생활임금
- 신청내용 : 소속 근로자에게(비정규직 포함) 지속적으로 시군에서 결정하는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서약
- 접수기관 : 시군 생활임금 담당부서

□ 추진절차



□ 인센티브

- (서약기업) 道 각종 인증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
 -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(가점 1점)
 - 경기도 착한기업(가점 3점)
 -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재인증(가점 1점) ※ 재인증만 해당
- (서약이행기업)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(신인도 평가)
 - 당해 사업 관련 신규채용자 생활임금 이상 지급 협약 (가점 0.2점~2점)
 - 생활임금 서약제 2년 이상 준수 기업 “생활임금 이행 확인서” (가점 2점)

□ 문의처 : 경기도 노동정책과(8030-2595), ○○시군 생활임금 부서(0000-0000)